

학생 생활 규정

제 정 : 2003. 10. 1.
개 정 : 2017. 4. 18.
개 정 : 2018. 5. 21.
개 정 : 2019. 2. 1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64조 내지 제68조에 의거하여 금강대학교 학생이 자치능력 및 지도력 신장과 건전한 학풍 조성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

제2조(설치·구성) ① 학생회 및 산하자치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총장이 지정하는 교직원 약간명, 학생대표 1명으로 구성하며 학생대표는 총학생회장의 추천을 받는다.

제3조(회의) ① 위원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학생회

제4조(조직·운영) 학생회 및 산하자치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학칙 및 이 대학교의 제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제5조(학생회원) 학생회 회원은 이 대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제6조(학생회 임원의 자격) ① 총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 학부 학생회장 및 부회장, 동아리연합회 회장 및 부회장, 기타 총장이 정하는 간부의 피선거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선출일을 기준으로 재학 중인 학생
2. 전체 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학생

② 학생회의 임원이 재임기간 중 학칙에 의한 징계(정학처분)를 받은 경우 징계기간 만료일 까지 그 자격이 정지된다.

③ 학생회의 임원은 휴학 중에도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제7조(자치활동) 학생은 본분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수업 및 연구분위기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자치활동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 제8조(학생회비)** ① 건전한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조달을 위하여 소정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회비의 사용은 학생전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에 한하며, 그 지출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제4장 학생단체

제9조(단체의 정의) 학생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라 함은 학생회 산하에 있거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단체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10조(등록요건) 단체로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칙 및 학생회칙에 부합되는 활동목적을 가질 것
2. 단체의 설립취지와 이념에 찬동하는 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질 것
3. 지도교수를 선정하고 취임 승락을 받을 것

제11조(등록절차 및 승인) ① 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매 학년도 초 지정 기간 내에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교학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등록 신청서(지정양식) 1부
2. 지도교수 취임승락서(지정양식) 1부
3. 회칙 1부
4. 활동계획서 및 예산서(지정양식) 1부
5. 회원(발기인)명단(지정양식) 1부

② 제1항에 의한 등록신청을 마친 단체는 교학지원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공고한 때부터 인정된다.

제12조(등록취소) 등록 단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생생활지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하거나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학칙, 학생회칙 또는 이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2. 교내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단체의 설립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는 경우
4. 등록기간 중에 단체의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학생활동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장 집회·게시·인쇄물 배포

제13조(집회신고) 학생단체가 학내·외에서 집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집회신고서(지정양식)를 집회예정 5일전까지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 교학지원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학교시설의 이용) 집회장소로서 학교의 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집회의 제한) 매학기 중간시험 및 기말시험 개시 1주일 전부터 시험 종료 시까지는 각 단체는 일체의 집회를 가질 수 없다.

제16조(확성기의 이용) 옥외에서 집회할 때에는 확성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확성기의 사용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교학지원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게시물의 제한) ① 모든 게시물은 반드시 교학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게시기간 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② 지정된 장소 외에 게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교학지원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집회에 관한 게시물은 집회승인을 얻은 후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인쇄물의 제작 및 배포) 학생이 단체 또는 개인의 명의로 인쇄물을 제작 및 배포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간 전에 인쇄물제작신청서(지정양식)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확인 후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소란행위의 금지) 수업, 교수의 연구, 학생의 학습, 대학의 업무수행 등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6장 봉사활동

제20조(봉사활동) ① 봉사활동은 방학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기 중에도 공휴일을 이용한 봉사활동은 허락할 수 있다.

② 봉사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 단체는 봉사활동 개시 15일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도교수를 경유, 교학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봉사활동 계획서 1부
2. 예산 계획서 1부
3. 참가 학생명단 1부

③ 봉사활동에 참가하는 학생수는 10명 이상, 봉사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봉사활동을 완료한 단체는 완료 후 7일 이내에 봉사활동결과보고서를 교학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봉사활동 시에는 지도교수가 현장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1조(규정변경) 이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위임)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생활지도위원회가 심의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